

보도시점 2025. 3. 12.(수) 조간 배포 2025.3.11.(화) 09:00

## '사후소득'인 사망보험금을 '생전소득'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.

- ◆ **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'더 많이'** ①연금 혹은 ②서비스로 받고,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
  - ① (연금형) **無(zero) 사업비** 등 추가비용 없이 '**노후소득 안정판**'으로 기능
  - ② (서비스형) '**보험의 서비스화**'를 촉진하여 간병·재활·건강관리(헬스케어) 뿐만 아니라 '**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**'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(월가)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
- ◆ 실무회의체(TF)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'25년 4/4분기(이르면 3/4분기) 준비된 보험사,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

### 1. 추진배경

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'24.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%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.

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, 국내 노인 빈곤율(66세 이상 중위소득 50%↓)은 39.2%( '23년, 통계청)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,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\*이다.

\* 노후적정 생활비(월 177만원)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('22년)

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 “노후가 안심되는 삶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\*를 추진하고 있으며,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.

- \* ❶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(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)
- ❷ 고령·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(70·75→90세) 및 보장(100→110세) 확대('25.2월)
- ❸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(금일 보도자료)
- ❹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→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(검토중)
- ❺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(검토중)

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.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.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.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.

아울러,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,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.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“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”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.

## 2.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·조건 및 신청자격

- ❶ (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) <sup>1)</sup>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, <sup>2)</sup>보험료 납입이 완료(계약기간 10년↑ & 납입기간 5년↑)되었으며 <sup>3)</sup>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. 또한 신청시점에 <sup>4)</sup>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.

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. 다만,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(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종신보험, 단기납종신보험)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(예:9억원/추후 확정)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일반적으로 과거(90년대 중반~10년대 초반)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.

② (유동화 조건)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(100%)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(최대 90%) 방식으로 정기형(예:20년)으로 운영된다.

③ (신청자격) 별도 소득, 재산요건은 없으며,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.

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('24.12월말)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.9만건이며, 유동화 대상은 약 11.9조원(보험사 취합통계)으로 추정된다.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,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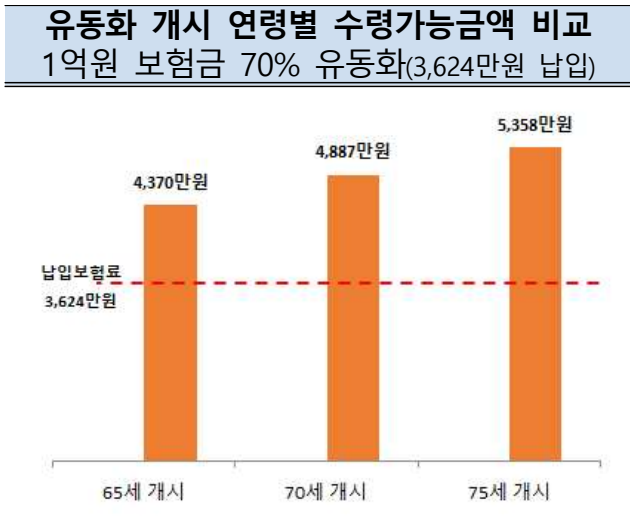
### 3. 유동화 방식(연금형, 서비스형)

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①연금형과 ②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,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.

① (연금형 상품)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. 유동화를 통해 ‘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’ (납입한 보험료의 100%<sup>초과</sup> ~ 200% 내외)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.

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,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(현재가치)는 반영되거나 **無(zero) 사업비**로 추가비용이 없다. 다만,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**예정이율**과 **유동화시점**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**고연령일수록**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.

**(사례1)** 40세 가입하여 **매월 15.1만원의 보험료**를 20년동안 **총 3,624만원을 납입**하여 **사망보험금 1억원**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 
 → 20년, 70% 유동화를 선택시, **납입한 보험료의 121%**(총 4,370만원/월평균 18만원/65세 시작)에서 **159%**(5,763만원/월평균 24만원/80세 시작)의 **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** 가능하며, **3천만원**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**수령 가능**



**<유동화 대상 보험계약(예정이율 7.5%)>**

납입기간	월납입액	총납입액	사망보험금
20년	15.1만원	3,624만원	1억원

**<20년 수령 70% 유동화시(예정이율 7.5%)>**

개시	월수령액	총수령액	사망보험금
65세	월평균 18만원	<b>4,370만원</b>	3,000만원
70세	월평균 20만원	<b>4,887만원</b>	
75세	월평균 22만원	<b>5,358만원</b>	

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.

**<20년 유동화시, 연령별·유동화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예시(단위:만원)>**

유동화 개시	60%			70%			90%		
	총수령	월수령	비율*	총수령	월수령	비율	총수령	월수령	비율
65세	3,745	월평균 16	<b>103%</b>	4,370	월평균 18	<b>121%</b>	5,618	월평균 23	<b>155%</b>
70세	4,189	17	<b>116%</b>	4,887	20	<b>135%</b>	6,283	26	<b>173%</b>
75세	4,592	19	<b>127%</b>	5,358	22	<b>148%</b>	6,889	29	<b>190%</b>
80세	4,940	21	<b>136%</b>	5,763	24	<b>159%</b>	7,410	31	<b>204%</b>

\* 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(월보험료 15.1만원, 총납입보험료 3,624만원)

연금형 유동화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.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,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,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.

**<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과 보험계약대출 비교>**

구분	사망보험금 유동화	보험계약 대출
장점	·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·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	·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
단점	·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	·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· 상환의무 발생으로,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 감소

**(사례2)** 소비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으로,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동일 금액을 (월평균 20만원, 총 4,487만원 수령) 보험계약대출\*로 매월 20년 이용하는 경우

\* 예정이율 7.5%, 계약대출이율 9%, 계약대출 대출원리금 미상환 가정

<b>&lt;시점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및 보험계약대출 비용(대출원리금 미상환) 등 비교&gt;</b>		
구분	사망보험금 유동화	보험계약대출
10년 경과시점	이자비용: 0원 잔존 사망보험금: 6,500만원	이자비용: 1,108만원 잔존 사망보험금: 6,447만원
20년 경과시점	이자비용: 0원 잔존 사망보험금: 3,000만원	이자비용: 4,416만원 잔존 사망보험금: 697만원
이후	이자비용: 0원 잔존 사망보험금: 3,000만원<고정>	이자비용: 6,615만원 잔존 사망보험금: 0원 /계약자동해지

- ☞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①**증가하는 추가 이자비용**이 없고, ②**상환의무**가 없으며, ③**20년 뒤에는 잔존 사망보험금**이 3,000만원으로 고정
- ☞ 보험계약대출은 ①**약 4천만원의 이자비용** 발생, ②**상환의무**가 있으며, ③**20년 뒤에 미상환시 계약해지**

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,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,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쏠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쏠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.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행 선택이 가능하나,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.

② (서비스형 상품) 연금형태(현금)가 아닌 **현물과 서비스**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. 보험사는 서비스·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(중개이익 등)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.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(헬스케어)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*(사례3)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**

- ① (통합 서비스형)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
- ② (요양시설 특화형)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

- A 보험사와 제휴된 B 요양시설을 이용중인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여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(요양시설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, 사망보험금 유동화금액으로 자동 상계처리)

- ③ (건강관리 특화형) 주요 질병(암, 뇌출혈, 심근경색 등)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\* 제공  
\*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상담, 식이요법 상담,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

특히,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·간병·주거·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‘보험 서비스화’의 초기형태(prototype)로 향후 제도 개선의 시범사업(test bed)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 보험산업이 ‘생애 전반의 종합(total) 서비스 제공자’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*4. 향후계획**

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‘25년 4/4분기(이르면 3/4분기)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,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.

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(TF)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.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,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,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-청약-가입후 쏘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\*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.

- \* ❶(가입전)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, 전문 상담채널 운영
- ❷(청약)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·설명 → 신청의사 자필 서명
- ❸(가입후) 유동화 철회권,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

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“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,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(win-win) 될 수 있는 과제”라고 밝혔다. “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당부” 하였다.

총괄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 무 관	윤세열	(02-2100-2961)
	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김현중	(02-3145-7652)

